
고충사건 특정감사 결과 보고

2025. 2.

I 감사 개요

□ 감사대상 및 기간

- 감사대상 : 고충사건 관련 ○○/□□ 관련부서
- 감사기간 : '24. 12. 9.(월) ~ '25. 1. 3.(금), 18일간
 - ※ 조사대상자 확대 및 근무일정 등으로 감사기간 1회 연장(12.20(금)→1.3(금)까지, 8일 연장)

□ 감사반 인원

- 총 9명(감사반장 1명, 감사반원 8명)

구분		소속 / 성명	비고
반장		감사실 A 실장 (B)	A 실장으로 변경 (인사발령-###, '##.##.부)
반원	내부	■팀 C / D	-
		◆팀 E / F	E 부장 내부파견 (감사실-##)
		◆팀 G	-
	외부	△△ H / I / J 노무사	-

□ 주요 감사사항

- 사건 처리 과정 적정성
 - 최초에 해당 사안을 ㄱ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위, 해당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거나 조사진행을 해태하였는지 여부 등
 - ㄴ사건 인지 이후 처리절차 적정성
 - 관련 법률 및 내부규정 준수 여부
- ○○○ 피해자에 대한 ㄴ 성립 여부 관련

- 가해자의 행위가 ◎◎ 피해 직원에 대한 ㄱ 또는 ㄴ에 해당되는지 여부
- ◎◎ 피해자에 대한 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걱정 징계 양정
- ㄷ 등 추가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

○ 부서별 감사사항

부서	내 용
●부서 (⊠그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ㄴ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ㄹ를 시행 요구한 근거 및 사유 등 ○ 문답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 ⊕팀장 / L ⊠그룹장 - M ⊠⊠⊠⊠ 본부장 / N 사장
■부서 (▣그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건 인지 시점, □ 및 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 ○ 문답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O 사원(■팀 ㅂ) / P ■팀장 - Q ▣그룹장 / R ⊠⊠⊠⊠ 본부장(부사장)
◇부서 (◇그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ㄹ시행 경과, ㄷ시행의 적정성 등 ○ 문답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S 대리(◇그룹) / T 그룹장 - U 상임감사
관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건 경과 파악 ○ 문답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◎◎ 피해자 / ■■ 피해자(V, W, X) - ■■ 피신고인

II 감사결과

1. 총 평

- ●부서에서 사건 발생 확인 후 즉시 해당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내부 보고계통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처리하였으나,
- 최초에 스을 이유로 ㄴ조사를 하지 않은 점, 타회사 직원인 ◎◎ 직원은 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ㄴ관련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■■의 ○방지를 위한 제반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
- 이에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, ○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및 철저히 이행 관리하도록 「기관주의」 처분 요구함

2. 감사결과 집계

- 처분건수: 총 4건
 - 신분상 처분: 1건(◇그룹장 「주의」 처분)
 - 행정상 처분: 3건(「기관주의」 1건 포함)

구분	기관주의	권고	통보(일반)	합계
건수	1	1	1	3

* 내부감사협의회('25.2.5)에서 ☒그룹장에 대한 「주의」처분은 「기관주의」에 포함하여 처분하고, ■그룹에 대한 처분은 「권고」 1건으로 통합하여 처분하도록 의결 (권고2, 개선1, 통보1 → 권고1)

III 처분요구

1. 지적사항 요지

연번	지적요지	관련부서	처분요구
1	◎◎ 피해자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처분 필요	■그룹 (□팀)	통보 (일반)
2	ㄴ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가. ㄴ조사 관련 ◎◎ 지 필요 나. 「갸시행세칙」 개정 필요 다. 관리자 대상 추가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라. 추가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	■그룹 (□팀)	권고
3	ㄴ 관련 사항 담당부서에 미이관 및 사고 보고 미시행	◇그룹장	주의
4	ㄴ사건 발생에 따른 기관의 처리절차 부적정	-	기관주의

2. 지적사항별 조치계획

① ◎◎ 피해자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처분 필요

- (현황 및 문제점) ㄴ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, ■■ 피해직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더불어 ◎◎ 피해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처분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■■는 자사의 피해직원에 대한 조사결과만으로도 ㄴ이 인정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확정하고자 하였음
- (원 인) ㄴ사건 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

- (조치계획) 피해자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 및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“통보(일반)”

② ㄴ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마련

가. ㄴ조사 관련 ○○○ 필요

- (현황 및 문제점) ■■ 「츠시행세칙」 제9조(조사)에 따르면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☆☆및 트하여야 하나, 인사위원회 재심의 의결 이후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서 ☆☆에는 통보하였으나 ㄴ하지 않음
- (원 인) 내부절차 미준수

나. 「츠시행세칙」 개정 필요

- (현황 및 문제점) ■■ 「츠시행세칙」 제9조(조사)에 따르면, 조사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만 ☆☆ 및 트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해석될 여지가 있어,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
- (원 인) 규정 관리 미흡

다. 관리자 대상 추가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

- (현황 및 문제점) 해당 사건의 보고과정에서 고충처리절차 또는 비에게 문의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판단이 없었으며, 업무프로세스의 미비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자를 포함한 추가교육,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
- (원 인) 관리자에 대한 교육 부족

라. 추가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

- (현황 및 문제점) 신고사실을 이유로 사건 관련자에게 보복 또는 업무상 불리하게 대우하거나, 신고사실을 추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처분함을 알려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
 - (원 인) 내부규정에 대한 안내 부족
- ⇒ (조치계획)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위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“권고” 요구

③ ㄴ 관련 사항 담당부서에 미이관 및 사고 보고 미시행

- (현황 및 문제점) ●부서에서 내부 보고 후 ◇부서에 ㄴ를 요청하였더라도 ◇부서에서는 ㄴ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경우 ㄴ (■부서)에 이관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였어야 하고, ■■ 「감사규정」 제17조(사고보고) 제2항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
- (원 인) 관련규정 미준수
- (조치계획) ㄴ 관련 사건을 담당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ㄴ로 처리하고 해당 사건을 ㄴ하지 않은 ◇그룹장에게 “주의” 요구

④ ㄴ 사건 발생에 따른 기관의 처리절차 부적정

- (현황 및 문제점) ㄴ이 인지된 사건을 ㄴ하지 않고 ㄴ를 통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ㄴ하기까지 결재과정에서 기관 내 여러 책임자급 직원의 ㄴ이 확인되었으며, 이를 통해 기관의 ㄴ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- (원 인) ㄴ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미시행
- (조치계획) ㄴ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“기관주의” 요구

IV 기타사항

1. 이행관리계획

- 처분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분상 처분 이행사항을 확인하고, 60일 이내 행정상 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사항은 ‘집행독촉장’ 발부 예정
- 이행관리 담당자 : ■팀 Y

2. 수감기관 건의사항: 없음

3. 향후 추진계획

- 감사위원회 심의·의결(“기관주의” 건): 2025. 2. 13.
- 처분요구서 통보: 2025. 2월 중
- 감사원 보고(공공감사시스템): 2025. 3월 중
- 경영공시: 2025. 3월 중
 - * 감사결과 확정 및 재심의 신청기간(30일) 이후 공시사유 발생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처분요구 번호	2025-006	처분요구일자	2025-02-14
처분종류	통보(일반), 권고, 주의, 기관주의		
관계기관	인천공항운영서비스(주)		
제목	□사건 처리 부적정		

지적내용

[이 부분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]

조치할 사항

① 인천공항운영서비스(주) 대표이사는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시 피해자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 및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 [통보(일반)]

② 인천공항운영서비스(주) 대표이사는 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 (권고)

③ 인천공항운영서비스(주) 대표이사는 □ 관련 사건을 ㄱ하지 않고 ㄴ 처리하고 해당 사건을 ㄷ하지 않은 ◇그룹장에게 「주의」 처분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

④ 인천공항운영서비스(주) 대표이사는 □·▣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장구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(기관주의)

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

직인생략